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32호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지상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 초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외 169필지

나. 정비구역의 면적: 117,114.00㎡

3.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노사신)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초구 사평대로 106, 5층(반포동, 서건빌딩)

4.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0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09.2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해당없음

7.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가. 특화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공동주택 및 주구중심 상가)

나. 단위세대 전용, 공급면적 변경 (세대수, 평형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 공용부 개선 및 부대복리시설 내부 레이아웃 변경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가. 대지면적 : 102,930㎡

나. 건 폐 율 : 20.67%(아파트 17.36%, 근린생활시설 49.98%)

다. 용 적 른 : 269.71%(아파트 273.16%, 근린생활시설 239.09%)

라. 최고높이 : 111.85m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지하3층 / 지상35층, 아파트 17개동, 2,091세대

공 급 구 분	주택의 형 태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15㎡ 이하	115㎡ 초과
계	아파트	2,091	492	694	646	259
분 양	아파트	2,091	492	694	646	259
임 대	아파트	-	-	-	-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6,203.0	도로	7,554.0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조합)가 전부 설치하되「도정법」제97조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녹지	4,426.0	공원	5,780.0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조합)가 전부 설치하되「도정법」제97조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공공청사	383.0	공공청사	850.0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조합)가 설치(부지조성)하되「도정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11. 의제 처리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관계법규

1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55-7305)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